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

(지석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0년 5월 29일

발 의 자 : 지석환 · 이영봉 · 최종현

정희시 · 왕성옥 · 조성환

권정선 · 김우석 · 김진일

김강식 · 최승원 · 민경선

임채철 · 이종인 의원(14명)

1. 제정이유

- 가. 현재 경기도에는 「경기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를 통하여 당뇨병 등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당뇨병은 각 유형의 발생 원인과 특성, 치료법이 달라 기존 조례만으로 당뇨병환자에 대한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존재함.
- 나. 이에 지원사업과 당뇨병지원센터 설치 등 당뇨병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뇨병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당뇨병환자의 지원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당뇨병환자 현황 조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라. 당뇨병환자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마. 당뇨병관리 지원센터 설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바. 당뇨병관리 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사. 당뇨병관리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아. 협력관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자. 지원사업과 당뇨병관리 지원센터의 운영의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3. 조례안 : 덧붙임

4. 참고사항

가. 관련부서 의견 협의 결과

1) 입법정책담당관 : 의견 반영----- [붙임1] 참조

2)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 일부 반영----- [붙임2] 참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40호

가) 예고기간 : 2020. 05. 25.~05. 29.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 예산정책담당관-2468 (2020. 05. 28.)----- [붙임3] 참조

3) 관계법령 ----- [붙임4] 참조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뇨병환자”란 체내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1형 당뇨병환자”란 당뇨병환자 중에서 면역기전에 의하여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을 체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2형 당뇨병환자”란 당뇨병환자 중에서 인슐린 분비반응의 저하 또는 인슐린저항성의 증가로 만성 고혈당 상태가 되는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중 당뇨병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인 당뇨병환자가 질병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 도지사는 「경기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통계관리를 함에 있어서 당뇨병환자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1형 당뇨병환자의 현황을 별도로 조사하고 내용을 매년 분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당뇨병환자에 대한 혈당측정기기, 인슐린주사기기 구입 등 의료비 지원사업
2. 도내 시·군, 학교 등에서 당뇨병환자가 인슐린 등을 주사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사업
3. 제6조에 따른 당뇨병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지원사업
4. 당뇨병환자 맞춤형 정책 수립(당뇨병 예방사업 포함)
5. 그 밖에 당뇨병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당뇨병관리 지원센터 설치) 도지사는 당뇨병환자의 건강 증진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당뇨병관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당뇨병관리 지원센터의 기능) 당뇨병관리 지원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지원
2. 당뇨병 예방사업 계획 수립 지원
3. 제4조에 따른 당뇨병환자의 현황 조사 지원
4. 1형 당뇨병환자와 2형 당뇨병환자의 유형별 맞춤형 교육 시행
5. 당뇨병환자의 자조모임 구성 및 운영 지원
6. 당뇨병에 대한 도민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당뇨병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당뇨병관리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뇨병관리 지원센터의 운영을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의료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경

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협력관계 구축) 도지사는 중앙정부, 도내 시·군 및 학교 등과 당뇨병환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제6조에 따라 설치된 당뇨병관리 지원센터 운영 및 제9조에 따른 협력관계 구축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제6조에 따라 설치된 당뇨병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안 검토결과통보서

자치법규제명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
검 토 결 과	○ 상위법령 근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이 제정조례안은 당뇨병환자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당뇨병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 이 조례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 등에 따르면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는 않음. 다만, 아래의 검토의견을 고려할 수 있음 ※ 다른 지자체 중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포천시, 하남시 등에서 유사한 조례를 발견할 수 있었음
검 토 의 견	○ 기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경기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 등에 따라 당뇨병에 대한 일정 정도의 지원 등이 있을 수 있음. 이러한 기존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당뇨병 지원 사업과의 중복 등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야 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에서의 보장 범위 변동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일부 사업이 중복 지원 등이 될 수도 있기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음.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조례 집행 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음 ○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임
관 계 법 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등
검 토 기 간	2020년 5월 일 ~ 5월 일
검토 담당자	지방행정주사(일반임기제) 임 영 덕

붙임2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의견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

수신	경기도의회(보건복지전문위원실)	발신	경기도(건강증진과)
검토부서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담당자 성명	김철희
자치법규명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	검 토 사 항	유	무	특기사항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	
	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		○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		○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		

검토결과 (조문 대비표)

자치법규안 (검토요구안)	검토안	검토사유 (의견)
제5조제4호 당뇨병 환자의 통계 분석에 따른 맞춤형 정책수립 (당뇨병 예방사업 포함)	제5조제4호 당뇨병 환자의 통계 분석에 따른 맞춤형 정책수립 (당뇨병 예방사업 포함)(삭제)	제5조제4호는 일반적인 정책수립의 과정이 정부통계 등의 근거에 기반하여 수행되고 있어 동 조항 제5호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제7조제2호 당뇨병 예방사업	제7조제2호 당뇨병 예방·관리사업 계획수립 및 통계조사·분석 등 지원	제5조제4항 삭제와 관련 제7조제2호 ‘당뇨병 예방사업’에서 계획수립, 통계조사, 분석 등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통계기반 정책수립에 대한 기관별 역할을 명료하게 하고자 함.

[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도지사는 도내 당뇨병환자의 지원을 위하여 장비구입 등 의료비 지원, 공간설치 지원, 당뇨병지원센터 설치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재정수반요인이 있음(안 제5조, 안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 제5조 ~ 제6조에 따라 도는 당뇨병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동 조항은 임의규정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이 불비하여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 작성자 : 예산정책담당관실 예산분석관 홍영표(031-8008-7318)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